

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

-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의 심사유예 허용 등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1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사항 ① :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 >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 주요국 의견서제출기간: (미국·일본) 3개월, (중국·유럽) 4개월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의견서제출기간보다 빠르게 의견서가 준비된 경우, 의견서와 함께 기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개정사항 ② :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 >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원인의 신청을 통해 심사받을 시점을 늦추는 제도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심사유예제도(늦은심사)의 주요내용

담당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신준호 (042-481-8321)
	특허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주상현 (042-481-8153)

□ 개요

- **(정의)** 출원인이 늦은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 유예가능기간* 중 심사받으려는 시점(유예희망시점) 선택가능

*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 ~ 출원일로부터 5년(실용신안은 3년)

- **(신청기간)**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신청*가능

* 분리출원, 변경출원, 무관리자에 대항한 정당한 관리자의 출원 및 우선심사 결정을 한 경우 신청불가

※ 심사유예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유예신청 취하 또는 유예희망시점 변경이 가능하며,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빠른심사로 변환가능(이 경우, 유예신청은 취하간주)



- **(심사청구료)**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를 신청 → 유예희망시점 2개월전까지 심사청구료 납부연기가가능*(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4항)

*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청구의 접수번호부여 다음날까지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함

- **(심사기간)** 출원인이 신청한 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견제출통지서) 제공(특·실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의2)